


## Fi 프리스타일 정기예금(법인)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**

구 분	내 용										
상품명	• Fi 프리스타일 정기예금(법인)										
가입대상	• 법인										
가입기간	• 24개월										
가입금액	• 10만원 이상 ~ 50억원										
한도금액	• 고객당 최대 50억원										
가입채널	• 영업점, 인터넷뱅킹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• 만기일시지급식 (복리식)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<span style="background-color: yellow;">[해당]</span>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
제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</li> <li>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</li> </ul>										
<b>이자율</b> (26.01.20 현재)	기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이율 적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9e79f;"> <th style="width: 30%;">(연,세전)</th> <th>Fi 프리스타일 정기예금(법인)</th> </tr> <tr> <td>기본이율</td> <td>2.60%</td> </tr> </table>	(연,세전)	Fi 프리스타일 정기예금(법인)	기본이율	2.60%					
	(연,세전)	Fi 프리스타일 정기예금(법인)									
기본이율	2.60%										
만기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9e79f;"> <th style="width: 30%;">경과기간</th> <th>이 율</th> </tr> <tr> <td>1개월 까지</td> <td>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고시이율을 비교하여 낮은금리 적용</td> </tr> <tr> <td>1개월 초과</td> <td>연0.1%</td> </tr> </table>	경과기간	이 율	1개월 까지	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고시이율을 비교하여 낮은금리 적용	1개월 초과	연0.1%				
경과기간	이 율										
1개월 까지	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고시이율을 비교하여 낮은금리 적용										
1개월 초과	연0.1%										
만기이자 계산방법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9e79f;"> <th colspan="3">이자 계산식</th> </tr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9e79f;"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월 단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일 단위</th> </tr> <tr> <td>복리식</td> <td><math>원금 \times \{(1 + 이율 / 12)^n - 1\}</math> (n은 경과월수)</td> <td><math>(원금 + 월복리이자) \times 이율 / 365 \times 일수</math></td> </tr> </table>		이자 계산식			구 분	월 단위	일 단위	복리식	$원금 \times \{(1 + 이율 / 12)^n - 1\}$ (n은 경과월수)	$(원금 + 월복리이자) \times 이율 / 365 \times 일수$
이자 계산식											
구 분	월 단위	일 단위									
복리식	$원금 \times \{(1 + 이율 / 12)^n - 1\}$ (n은 경과월수)	$(원금 + 월복리이자) \times 이율 / 365 \times 일수$									
원천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</li> </ul>										

구 분	내 용
중도해지이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, 약정이율 적용</li> </ul>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</li> </ul>
자료열람 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분할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</li> </ul>
만기해지 사전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동해지 신청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</li> </ul> </li> <li>자동재연장(원금연장 또는 원리금연장) 신청은 불가합니다.</li> </ul>
연계·제휴 서비스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있음

[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]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44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ol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(주)다올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**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**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     예금주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/인)      대리인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/인)